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인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명시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0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구인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명시	3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3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구인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u>채용하려는 자</u> 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u>채용하려는 자</u>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1의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u>가. 국가기관</u> 1) <u>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u> 2) <u>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u> <u>나. 지방자치단체</u>

2. ~ 6. (생략)	다.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공공기관</u> 라. 「<u>지방공기업법</u>」에 따른 <u>지방공사</u> 및 <u>지방공단</u> 2. ~ 6.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 불리변경 등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현행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구인자”의 정의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공단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등 공공부문도 채용절차 관련 금지행위 및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¹⁾.

1) 참고로, 현행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직 등 민간근로자 채용과정에만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선도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을 구인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채용절차 관련 의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또한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의무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바²⁾,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어³⁾, 국가기관에 대한 과

2)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태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⁴⁾, 국가기관에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역시 미비하다는 점, 국가는 자신의 고권적인 작용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된 경우 이를 스스로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국가기관 간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예외규정을 두어 명시적으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공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022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39p.(법무부, 2022)

- 4) 참고로 「통계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두고 있으며, 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경우 일정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책임을 제외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하여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가 불공정 채용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법한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법안에 시정명령 근거 등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9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